

마을기업 교육

설립 전 교육 (입문/기초/공통/심화) 24시간 (신규)
전문 교육 4시간 (2회차)

구분 (교육 시간)	필수인원	교육 대상	교육 시기	교육내용
입문 (7시간)	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참가)	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·단체	심사 전 (수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지원 발굴 자기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
기초 (7시간)	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참가)		심사 후 약정체결 전 (2-3월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안운영 방안 마을기업 갈등관리 마케팅 및 판로 등
공통 (7시간)	회원 2인 이상 (대표자 참가)	1회차(신규)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	약정체결 후 (4-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권역별·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선례마을기업과의 교류·소통
심화 (3시간)	회원 70% 이상		약정체결 후 -보조사업 종료 전까지 (수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(재무, 회계, 인사, 성과관리 등) *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
전문 (4시간)	회원 5인 이상 (대표자 참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(필수) 3회차(고도화) 또는 우수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(희망)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보, 마케팅, 브랜드 관리,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기획·개발, 특허 신청,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

※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과는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

마을기업 지정절차



같이하는 마을기업
가치있는 지역사랑

마을기업



마을기업
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
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
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
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
(202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)

마을기업 지정조건

- 1 **조직형태**
 -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형태
- 2 **공동체성**
 -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준수
 - 최소 5인 이상 지역 주민들이 마을기업의 출자자로 참여
 - *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% 이하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 50% 이하
- 3 **공공성**
 - 마을기업의 이익 우선,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과 상생 위해 노력
 -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및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, 지역 일자리·소득창출에 기여하여야 함
- 4 **지역성**
 -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·운영
 - 지역주민의 사업주도성
 - * 지역주민 비율(회원의 70% 이상,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)
 - * 마을기업 자부담(보조금의 20%)은 구성원의 자발적 출자
- 5 **기업성**
 -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시장경쟁력 확보
 -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

마을기업 지원내용

사업비 지원

- 최대 3차례, 1억원(1회차 5천만원, 2회차 3천만원, 3회차 2천만원)
- * 마을기업 지정 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가능
- 자부담 : 보조금의 20% 이상
- * 다만, 청년마을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

자립 지원

- 판로·유통 지원**
 - 코로나19 이후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· 매출 증진 위한 판로 다변화 및 온라인 입점 지원
- 교육 및 컨설팅**
 - 마을기업 교육 :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, 설립희망자, 기타 마을기업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
 - 경영 컨설팅 : 마을기업 경영 상황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**
 - 마을기업의 국민 인지도 제고 위한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추진
-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**
 -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
 - 길라잡이 마을기업 선정
 - 마을기업인의 날 : 10월 경

우수마을기업 선정

- 마을기업 4대 요건 중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우수한 마을기업 선정
- 사업개발비 지원(순위별 차등 지급/자부담 없음)
- 홍보 및 판로 지원

모두애 마을기업 선정

- 마을기업의 정체성 보유 기업으로 성장 기반 및 전국적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
- 사업개발비 지원(자부담 10% 이상 부담)
- 홍보 및 판로 지원

마을기업 유형

예비마을기업

- 목적**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·육성
- 대상** 예비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
 - 5인 이상 참여하는 非 법인 가능
 -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(설립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)
- 보조금** 1천만원 한도 내 / 자부담 20% 이상 부담
- 지정시기** 시도별 예산 및 여건에 따라 연 1~2회 선정(기금적 2회)
- 육성기간** 약정체결 후 최소 5개월 육성
- 약정기간** 약정체결일부터 만 2년(2년 초과일 경우 자동 지정 취소)

1회차(신규) 마을기업

- 목적** 마을기업으로 존속·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
- 대상** 지역 기반의 공동체 주도(주민 5인 이상)로 설립한 법인
 - * 필수 : 입문(7시간, 자원 전 이수), 기초·공통·심화교육(총 17시간)
- 보조금** 5천만원 / 자부담 20% 이상 부담
- 선정기준** - 마을기업 4대 지정요건 충족
 - 사업계획의 적정성
- 선정시기** 행안부 매년 심사·발표 1~2월 예정
 - * 모집 공고(전년도 10월), 적격 여부 검토 및 시·도 심사 (전년도 11~12월 중)

2회차(대지정) 마을기업

- 목적**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
- 대상** -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
 - 운영실적 우수,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
 - * 필수 : 전문교육(신청 전 4시간 이수)
- 보조금** 3천만원 / 자부담 20% 이상 부담
- 선정기준** - 마을기업 4대 지정요건 충족
 - 사업관리·계획의 적정성
 -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
- 선정시기** 행안부 매년 심사·발표 1~2월 예정
 - * 모집 공고(전년도 10월), 적격 여부 검토 및 시·도 심사 (전년도 11~12월 중)

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

- 목적**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- 대상** -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
 - 운영실적 우수,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
 - * 선택 : 전문교육(4시간) 이수 시 가산점(3점) 부여
- 보조금** 2천만원 / 자부담 20% 이상 부담
- 선정기준** - 마을기업 4대 지정요건 충족
 - 사업계획의 적정성(실적 포함)
 -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
- 선정시기** 행안부 매년 심사·발표 1~2월 예정
 - * 모집 공고(전년도 10월), 적격 여부 검토 및 시·도 심사 (전년도 11~12월 중)

